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65
----------	-------

발의연월일 : 2025. 6. 16.

발 의 자 : 박충권 · 김상훈 · 김태호
박준태 · 우재준 · 신성범
이인선 · 박성훈 · 백종현
조지연 · 조은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 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하는 것
임(안 제19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대상자
2.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u>보호대상자로서</u>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② ~ ④ (생 략)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u>----- ----- ----- ----- ----- ----- ----- ----- 1. <u>보호대상자</u> 2. <u>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u> ② ~ ④ (현행과 같음)